

하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이유서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'16.9.12 경주지진(규모 5.8)을 계기로, 상하수도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
- 용어의 정의, 내진성능목표, 내진설계지반운동 수준 등을 구체화 하고 지진 발생시 급수기능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여 상하수도시설의 내진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설계기준의 용이한 해석을 위해 용어의 정의 신설
 - 내진설계, 내진율, 기반암, 위험도계수, 유효지반가속도, 지진위험도 등
-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반영
 - 설계지반운동의 지반분류체계,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 추가
 - 내진성능수준의 세분화(2단계→4단계)
 - ※ 기능수행, 붕괴방지수준 → 기능수행, 즉시복구, 장기복구/인명보호, 붕괴방지
-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방법 제시
 - 관로와 구조물의 접속부, 관로 이음부의 내진성능 확보 등
 - 관망의 블록화, 긴급차단밸브 설치 등 단수시간과 범위의 최소화 방안 등
- 지반조사시 준용하여야 하는 내진설계기준 제시
 - KDS 17 10 00 건설공사 내진설계일반 준용